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96호 2021. 4. 22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1-587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22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(안)

2. 개정이유

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
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 개정(안 제3조)
- 나. 공익목적의 기준을 규정(안 제22조)
- 다.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, 감면절차 개정(안 제22, 제24조)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csbking@korea.kr
- 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4층 도시과
- 3) 팩스 : 054-650-634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(전화: 054-650-624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 개정(안 제3조)

- 공동이용시설 추가 : 주민공동체 활성화, 소득 및 일자리 창출, 주민 문화·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
나. 공익목적의 기준을 규정(안 제21조의2)

다.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, 감면절차 개정(안 제22, 제22조의2)

- 감면대상 : 도시재생지원센터, 주민협의체, 마을관리협동조합 등

3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의뢰 예정

마. 입법예고 결과 : 4월중 입법예고 실시

바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사. 성별영향평가 :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

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도시재생사업”을 “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군”라”를 ““군”이라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제5호”를 “제3조제6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주민이”를 “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에서”로, “제3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4. 협동조합, 마을카페,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
5. 마을공방, 공동창고, 매점, 숙박, 세탁 등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
6. 학습·회의 공간, 공연·전시·휴게시설, 운동시설 등 주민의 문화·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공익 목적의 기준)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

2.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
3. 마을의 환경개선, 공동이용시설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
4.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
2. 사업지역 내의 주민협의체 사무실 및 회의실
3. 마을관리협동조합

② 제1항 이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경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 이외의 자가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등) ① 제22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,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물건의 표시
2. 대표자의 주소, 성명
3.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
4. 사용요금 등 운영·유지관리 계획
5. 안전관리계획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22조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공 동 이 용 시 설 사 용 계 획 서

☐ 물건의 표시

- 소재지
- 지목(구조)
- 면적(건물면적)

☐ 사용목적 :

☐ 사용기간 :

☐ 운영·유지관리 계획 :

☐ 안전관리계획 :

☐ 사용조건 :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

위와 같이 공동이용시설 사용계획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주 소

성 명

(인)

예천군수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공동이용시설(감면) 사용허가서

☐ 물건의 표시 :

☐ 사용목적 :

☐ 사용기간 :

☐ 물건의 표시 :

☐ 사용료 감면율 :

☐ 대표자 주소 :

☐ 대표자 성명 :

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물건의 공동이용시설(감면)
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

년 월 일

예천군수 (인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예천군의 <u>도시재생 사업의</u>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도시재생</u> <u>및 새뜰마을사업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주민”이란 예천군(이하 “ <u>군</u> 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, 군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2. 3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“ <u>군</u> ”이라 ----- ----- ----- -----. 2.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공동이용시설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 <u>영</u> ”이라 한다) 제3조제5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공동이용시설) ----- ----- ----- <u>제3조제6호</u>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협동조합, 마을카페,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공동체</u>

<신 설>

<신 설>

4.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

<신 설>

활성화를 위한 시설

5. 마을공방, 공동창고, 매점, 숙박, 세탁 등 소득 및 일자리

창출을 위한 시설

6. 학습·회의 공간, 공연·전시·휴게시설, 운동시설 등 주민의 문화·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
7. -----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 사업에서 -----
제6호-----

제21조의2(공익 목적의 기준)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

2.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

3. 마을의 환경개선, 공동이용시설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

4.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

제22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<u>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</u> 제22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 지원센터 2. 사업지역 내의 주민협의체 사무실 및 회의실 3. 마을관리협동조합 ② 제1항 이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경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 이외의 자가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. 제22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등) ① 제22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
---	--

제1호 서식의 사용계획서를
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
제출하고, 별지 제2호 서식에
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물건의 표시

2. 대표자의 주소, 성명

3.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

4. 사용요금 등 운영·유지관리
계획

5. 안전관리계획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
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22조의 공동이용
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
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
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
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
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】

[시행 2019. 11. 28.] [법률 제16562호, 2019. 8. 27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<개정 2017. 12. 26., 2018. 4. 17., 2019. 8. 27.>

1.~9. (생략)

10. "도시재생기반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
나.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, 마을회관, 공동작업장, 마을
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

11.~12. (생략)

제30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
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
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
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
또는 경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,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
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12. 26.]

제3조(공동이용시설의 종류)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“놀이터, 마
울회관, 공동작업장,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
설”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
한다. <개정 2019. 11. 26.>

1. 놀이터, 마을회관,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

2.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·세탁장 등 공동작업장, 화장실 및 수도
3. 어린이집·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
4. 마을방송국·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
5. 마을기업·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